

서울시민의 건강증진을 위한 신체활동장려사업 운영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 설명

- ☐ 존경하는 김영옥 위원장님,
그리고 선배·동료 위원 여러분!
안녕하십니까?
더불어민주당 은평 제2선거구 출신 이병도 의원입니다.
- ☐ 「서울시민의 건강증진을 위한 신체활동장려사업 운영 및 지원
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」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릴 수 있는 기회를
주신 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.
- ☐ 지금부터 본 위원이 대표발의한 의안번호 제3004호
「서울시민의 건강증진을 위한 신체활동장려사업 운영 및 지원 조례
일부개정조례안」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.
- ☐ 현행 조례는 신체활동장려사업의 지원대상을 서울시민 외에 ‘서울
소재 직장 종사자’까지 포함하고 있습니다.
이는 조례의 기본 취지인 ‘서울시민의 건강증진’이라는 목적 및
적용대상과 부합하지 않는 측면이 있으며, 현재 시행 중인 ‘서울형

헬스케어(손목닥터9988)' 사업은 지원대상을 서울시민뿐만 아니라 '서울 소재 직장인·대학생·자영업자'까지 확대 운영하고 있어 조례와 실제 사업 간에 불일치가 발생하고 있습니다.

☐ 또한, '서울형 헬스케어(손목닥터9988)' 사업의 참여자가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포인트 지급에 소요되는 예산이 급증하면서 재정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입니다.

☐ 이에, 신체활동장려사업의 지원대상을 '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'으로 한정하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함으로써, 조례 해석 및 적용의 혼란을 방지하고, 제한된 예산을 서울시민의 건강증진을 위해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.

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.

☐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,

아무쪼록, 이 개정안의 입법취지를 살피시어 원안대로 의결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.

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.

감사합니다.